

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(제2조제3항 관련)

1. 시설기준

소방장비를 보관·유지·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, 대기실,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장비기준(차량 적재기준)

구 분	종 류	보유기준
기동장비	소방펌프차(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) 등	1대 이상
진압장비	수동식 소화기(3.3Kg이상)	2대 이상
	소방호스(40mm / 65mm)	(10/5)본 이상
	관창, 결합금속구 등	3개 이상
구조장비	사다리	1개 이상
보호장비	공기호흡기, 방화복, 안전모, 안전화, 장갑 등	대원별 1착 이상

※ 비고

-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,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“○○전담의용소방대” 라고 표시한다.
-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「구조장비 기준」 또는 「구급장비 기준」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.